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03
----------	-------

발의연월일 : 2026. 6. 22.

발 의 자 : 최기상 · 정일영 · 안도걸
김영환 · 황운하 · 조승래
이성윤 · 김남근 · 정태호
이해식 · 권철승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 등을 체납할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지방세징수법은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3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함. 이에 관세 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재 관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국세·지방세 체납 강제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체납자 관련 정보공유나 징수업무 인력요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요 공항·항만의 강제징수 인력·설비가 부족하여 체납자에 대한 검사가 형식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관세청이 위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체납자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자통관시스템 연계를 위해 전산망 구축 등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음.

이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탁받은 국세·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인력요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 43조의3 신설 등).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위탁받은 강제징수 등의 수행을 위한 협조 등) ① 세관장은

「국세징수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납세자의 체납 현황, 납부능력 등 강제징수 등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필요한 공항·항만을 관할하는 세관에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받은 수입물품의 강제징수 등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5제1항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3조의3(위탁받은 강제징수 등의 수행을 위한 협조 등) ①</u> <u>세관장은 「국세징수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입 물품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납세자의 체납 현황, 납부능력 등 강제징수 등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p> <p><u>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u></p>

의 파견 등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필요한 공항·항만을 관할하는 세관에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받은 수입물품의 강제징수 등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①

관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16조의5(출국금지 요청 등) ①

3천만원

② (현행과 같음)

③

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금지 또는 출국정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또
는 일부 납부하여 체납된 관
세가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
우

2. ~ 4. (생략)

④ (생략)

-----.

1. -----

-----3천만원-----
--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